

삼정KPMG Tax Newsletter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1. 개요

정부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 참여)를 개최하여 지난 1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의 하나로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지원(현금 보조금 포함) 및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의 경우, 현금보조금의 최대 한도가 투자액 대비 30%~5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항구적으로 40%~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고, 특히 2025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당해 비율을 50%~75%로 추가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5년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중 75%의 현금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에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현행 30%) 및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부분, 현행 50%)가 포함되었으며, 60% 비율을 적용받는 분야에는 R&D센터(기타의 산업 부분, 현행 50%) 및 국가첨단 기술(현행, 50%)가 포함되었습니다.

세제 지원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적용되도록 하는 지원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2. 현금보조금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금번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보조금의 지원비율의 최대 한도는 산업분야 별로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표1: 외국인투자 현금보조금 분야별 최대한도>

현 행		개 정(括호 안은 '25년 적용%)	
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	50%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50% (75%)
		R&D센터(기타), 국가첨단전략기술	50% (60%)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주	30%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주	50% (75%)
신성장·첨단·소부장	40%	신성장·첨단·소부장	45% (55%)
대규모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30%	대규모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40% (50%)

[주] 1. 현금지원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라는 용어에 비해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첨"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현금보조금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개별 신청 건을 심의한 후 현금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한 지원 비율의 한도가 30%에서 75% (2025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R&D센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부분에 적용 비율이 역시 50%에서 75%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R&D센터(기타)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 비율 한도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 역시 15%~20%포인트 상향 조정되어 50%~55%의 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한편, 현금 보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현금보조금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표2: 외국인투자 현금보조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분담율>

현행		개 정	
수도권	30 : 70	수도권	30 : 70
비수도권	60 : 40	비수도권	70 : 30

기회발전특구	70 : 30	기회발전특구	80 : 20
--------	---------	--------	---------

3. 세제 지원 정책 주요 내용

현행 세법 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승인 받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부과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현행 세법 상 5년간 100% 감면이 허용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번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장 기간이 2년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세법 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지차단계가 기회발전특구^{Note}로 지정한 지역(자치단체별로 면적한도(광역시 4.95km², 도 6.6 km²) 규정이 적용됨)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거나, 기존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 5년간 100%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경우, 면적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Note: 2024년 11월 6일 현재 대구, 부산, 전남, 경북, 전북, 경남, 대전, 제주(1차 지정 8개 시도) 및 충북, 충남, 세종, 울산, 광주, 강원 (2차 지정 6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였고, 현재 주로 국내기업이 투자하고 있음.

별첨: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요건과 지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아래 기능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수행할 것

- ①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조정
- ②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 ③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등의 운영
- ④ 인사 정책의 수립·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 ⑤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 ⑥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 지역본부에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2)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지정방법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 2)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 지분비율이 증명 가능한 서류

Key Contacts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투자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삼정KPMG 전담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ax Partners (Global Tax Team)		
오상범 부대표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이성욱 전무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김동훈 전무	dkim@kr.kpmg.com	02-2112-0938
이상무 전무	sangmoolee@kr.kpmg.com	02-2112-7899
김정은 전무	jungeunkim@kr.kpmg.com	02-2112-0283
조상현 전무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서유진 상무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송형우 상무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박상훈 상무	spark17@kr.kpmg.com	02-2112-6672
민우기 상무	wmin@kr.kpmg.com	02-2112-6886
이진욱 상무	jinwooklee@kr.kpmg.com	02-2112-3476
이창훈 상무	changhoonlee@kr.kpmg.com	02-2112-6815
백천욱 상무	cbaik2@kr.kpmg.com	02-2112-3339
강성원 상무	kang22@kr.kpmg.com	02-2112-6771
김용희 상무	ykim205@kr.kpmg.com	02-2112-7734
류수석 상무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Privacy](#) | [Legal](#) | [Unsubscribe](#)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